

「2026년 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 장관표창 추천(신청) 공고」

전기기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수출 확대 등 전기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* 본 공고는 기공고된 공고번호 제2026-249호('26. 3. 30.)의 연장 공고로서, 최초 공고일 이후 신청서를 접수한 장관표창 신청자를 통합하여 심사·포상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6. 10. 6.
산업통상부 장관

I 개요

1. 목적

- ☐ 우수한 국가 전력망 운영의 기초 산업이자 기간산업인 전기기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여 전기산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도모

2. 포상 대상

- ☐ 전기기기 산업 관련 업계, 학계, 연구기관, 유관 기관 등에 소속되어 기술개발, 수출 확대 및 기술 문화 확산 등 전기기기 산업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공헌한 자

가. 전기산업 기술개발 및 지원에 공이 큰 자

- 친환경, 고효율 등의 신제품,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자
- 전기기기 시험, 표준화, 품질향상 등에 기여한 자

나. 전기산업 수출 확대에 공이 큰 자

- 수출을 통한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
- 신규 시장개척 지원 등 수출 확대 지원에 기여한 자

다. 전기산업 경쟁력 강화에 공이 큰 자

- 전기기술 문화 확산 및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한 자
- 대·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자
- 전기산업 기술 인력양성에 기여한 자

라. 기타 전기산업 발전 및 경쟁력 향상에 공이 큰 자

3. 포상 훈격 및 규모

구 분	'24년	'25년	'26년(안)
산업통상부 장관 표창	12	12	12
계	12	12	12

* 2026년도 포상 규모는 산업통상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

4. 포상심사 기준

구 분	심사내용
수공기간	■ 전기기기 분야에서의 전체 근무기간
전기기기 산업발전 기여도	■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 기술개발 활동 등 ■ 신시장 개척, 수입 대체 및 수출증대 활동 등 ■ 고용 창출, 세제지원 창출, 기업 간 정보공유, 동반성장 협력 등 ■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 절감 활동 등
기타 전기산업 발전 기여 항목	■ 노사 화합, 근무환경 개선 노력, 봉사 정신, 인적자원 개발 등 ※ 기술개발 결과로 특허,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우수한 경우 우대(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) ※ 상위 훈격의 경우 제조업체 종사자를 우선 추천

* 공적 조서 작성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 가능

5. 포상대상자 선정 절차

- ☐ 전기기기 업계,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의 신청과 추천을 받아 공적심사 위원회(한국전기산업진흥회)에서 포상후보자 추천(10월)
- ☐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자 선정(10월)

6. 포상 수여

- ☐ 「2026 전기산업의 날」 기념식
 - 일 시: 2026. 12. 4.(금), 11:00 ~
 - 장 소: 엘타워 그레이스홀(6F) [서초구 양재동 소재]



「2025 전기산업의 날」 행사 사진

* 「2025 전기산업의 날」 기념식 영상 바로가기 <https://youtu.be/Je-TUdzejsU>

II 포상추천 제한 대상

1. 수공기간

-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

2. 재포상 금지 * 기준일 : 수여일로부터 추천일

-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,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*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
※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(수여일)에서 훈장은 7년, 포장은 5년,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(추천일)될 수 있음
-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등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
- 훈·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
- 표창(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)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

3. 추천 제한

-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(기관)
- 형사처분
 -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,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-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

- 「상훈법」 제8조 및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단체 및 기관)과 그 임원

-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10조 및 같은 법 「시행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
-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■ 「사업장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<http://dart.fss.or.kr>, 회사별검색→사업보고서→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- 다만,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,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 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및 기관 포함) 및 그 임원

-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- 다만, 상기 1), 2)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

-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(기관장)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3,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
- 추천일 당시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
 - ※ 국세·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(<https://www.share.go.kr>)의 e하나로민원(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)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
- 사회적 물의 등 유발
 -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또는 소송·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기관)
- 기타 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 포상과 관련한 내용은 정부의 상훈법, 정부포상업무지침,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을 적용함

III 향후 추진 계획

1. 포상 접수

- 연장접수기한: ~ 2026. 10. 15.(목), 18:00 접수분까지
- 접수 및 문의처: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회원사업실 나동찬 과장
 - (전화) 02-6952-2796, (이메일) dcna@koema.or.kr
- 제출 서류
 - 포상신청서 및 공적조서 각 1부
 - 추천 훈격에 해당하는 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각 1부
 - 해당 증빙자료(특허증, 인증서, 수출실적 증명원 등)

2.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개최

- 일 자: 2026년 10월 초(예정)
- 장 소: 진흥회 대회의실

제출 서류 작성 안내 사항

제출 증빙자료					
포상신청서 <서식 1>	■ 추천자는 소속 회사 또는 기관의 대표자 기재 ■ 소속된 기관의 직인(또는 인감)을 날인하여 제출 ※ 스캔본 제출 필요				
공적조서 <서식 2>	■ (2)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 명확히 기재 ■ (6~9) 예시 글자 부분은 삭제 후 작성 * (7) 소속, (8) 직위는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포장증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히 기재 ■ (10) 수공 기간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■ (11) 공적요지는 (26) 공적사항 요약으로 75자 내외(60자~70자)로 작성 ■ (12) 추천훈격은 수상코자하는 훈격을 기재 * 산업부장관 표창 ■ (18)~(21) 주요 경력은 (10) 수공 기간을 확인하는 주요 내용이 되므로 연월일로 연결되도록 최근 내용부터 위에서 아래로 작성 ■ (22)~(25) 과거 포상기록은 동일 공적으로 기 포상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장관표창 이상의 경우만 기재 ■ (26) 공적사항은 도표, 그림 등은 최소화하고 공적에 대한 성과는 가급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서술식으로 작성 ※ 한글파일 제출 필요				
동의서 2종 <서식 3~6>	■ (12) 추천 훈격에 해당하는 서식에 포상 후보자 정보 기재 및 서명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추천 훈격</td><td>산업부 장관</td></tr> <tr> <td>제출 서식</td><td>서식 4, 4-1</td></tr> </table> ※ 스캔본 제출 필요	추천 훈격	산업부 장관	제출 서식	서식 4, 4-1
추천 훈격	산업부 장관				
제출 서식	서식 4, 4-1				
공적조서 관련 증빙자료	■ 전기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부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 리스트(자유 양식) 및 증빙자료 ■ 특허출원, 지재권 등의 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(특허증 사본, 특허번호 등) ■ 수출실적 증명원 등 수출실적 증빙자료 ※ 해당하는 경우 제출				

* 관련 문의 :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나동찬 과장(02-6952-2796, dcna@koema.or.kr)

<서식 1>

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신청서

업체(기관)명			
주 소			
대 표 자		사업자등록번호	
법인등록번호		산재보험 관리번호	
포상후보자	성 명		직위
	부서명		전화 (사무실) (휴대폰)
	이메일		
공적 내용	※ <서식 2> 공적조서의 (26) 공적사항 중 핵심 내용 위주로 구체화, 계량화, 수치화하여 실적을 알 수 있도록 개조식으로 10줄 이내 작성		

위 사람을 2026년도 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

2026년 월 일
추천자 소 속 :
대 표 자 : (직인)

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귀중

<서식 2>

공 적 조 서

※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.

(1)성 명	(한글)	(한자)	
(2)주민등록 번호	-	(3) 군번(군인의 경우)	해당 없음
(4)국 적	(외국인의 경우 기재)		
(5)주 소			
(6)직 업	(7)소 속 (업체명)		
기업가, 회사원 등		☞ 앞뒤 확인 필요	
(8)직 위	(9)등 급(직급, 계급)	(10)수공기간	
과장, 차장, 부장, 상무이사, 전무이사, 대표이사 등	00급	년 월 *포상신청일 기준 : 2026. 9. 30	
(11)공적요지 (65자 내외) * 공적 요지 작성 시 글자 수는 반드시 65자~75자 사이로 기재 * 마지막은 '~ 기여함' 으로 끝맺음 / '상기인은' 표현 금지			
(12)추천훈격		(13)추천순위	(공 란)
조 사 자			
(14)소 속	(공 란)	(15)직 위	(공 란)
(16)직 급	(공 란)	(17)성 명	(공 란)
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. . . 추 천 관 (공 란) (인)			

경력사항 (최근 내용부터 위에서 아래로 작성)			
(18)년 월 일	(19) 이 력	(20) 년 월 일	(21) 이 력
과거 포상기록(훈장.포장.표창별로 기록)			
(22)년 월 일	(23)내 용	(24)년 월 일	(25)내 용
(26) 공 적 사 항			
* 공적 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(구체적, 계량적, 객관적) 작성 * 서술식으로 2,500자(공백 포함) 이상 작성 * 아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1. 기술개발 기여도 -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 기술개발 활동 등 2. 수출증대 기여도 - 신시장 개척,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활동 기여 3. 정부정책 및 사업 참여도, 산학연간 협력 등 대외활동 기여도 - 고용 창출, 세제지원 창출, 기업 간 정보공유, 동반성장 협력 등 4. 품질향상 기여도 -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 절감 활동 등			

공적내용(을)지에 계속 작성

(26) 공 적 내 용 (을)
-

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

(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후보자용)

□ 장관표창 후보자

성명	
소속	
직위(급)	

위 본인은 전기기기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,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,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.
-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.

2026. . .

성명

(서명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,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
-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직급(계급), 공적내용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(외국인의 경우)
-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기록부는 영구,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<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. / □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 >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(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후보자용)

< 개인정보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,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
- (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)
 - 개인정보 항목 : 성명(단체명, 한자), 주소, 직업, 소속, 직위 및 등급(직급,계급), 근무기간, 공적요지, 주요경력, 군번(군인의 경우), 국적, 과거포상
 - 민감정보 항목 : 징계, 형벌 (해당 시에 수집·이용)
-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기록부는 영구,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위와 같이 2026년 월 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합니다.

☐ 동의하지 않습니다.

성명

(서명)

위와 같이 2026년 월 일 민감정보(해당시)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합니다.

☐ 동의하지 않습니다.

성명

(서명)

<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 제공 동의 >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- 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)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,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,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, 상훈수여증명서 발급
- (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) 주민등록번호
- (수집근거)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(대통령령 제31380호)
- 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) 표창기록부는 영구,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

위와 같이 2026년 월 일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)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
☐ 동의합니다.

☐ 동의하지 않습니다.

성명

(서명)